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사보고서

2024. 1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5일, 김용민의원 외 169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24.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24.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하였음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였음.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였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군 부대를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음.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에게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국회기물을 파손하였음.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군 병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등을 점령하고,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감시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여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

위로서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므로 「국회법」 제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총 지휘 의혹 사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사건,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내란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수사요구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후 본 회의에 부의되며,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동 수사요구안에서 정한 범위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확정되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특별검사 이하 조직의 규모, 수사기간, 재판기간 등이 적용됨.

참고로,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된 경우, 추천 주체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2024. 11. 28.)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됨.

한편, 현재 동 수사요구안의 수사 대상과 관련된 개별 특검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되지 않았는데, 특별검사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

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승원)

본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 인멸 시도 등의 범죄 혐의 사건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추가하였고,

둘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형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주체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추가하였고,

넷째, 그 밖에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 호의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사대상을 추가하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의결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 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대상을 추가하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함.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지도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군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5조제2항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였고,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음.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동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를 심의 및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가담하였음.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였음. 또한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위와 같은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

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준비, 지원, 시도 등을 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 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 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주 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주 문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약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함.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지도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군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5조제2항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였고,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석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음.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동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를 심의 및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가담하였음.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였음. 또한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위와 같은 의혹 등을 전반적으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로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u>의혹사건</u>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u>의혹사건</u>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원 안	수 정 안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u>의혹사건</u> <u><신 설></u> 4.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u>국무위원들이</u>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u>의혹사건</u> 5.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 여단, <u>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u>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u>시도</u>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4.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u>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u>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5.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u>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u>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6.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 여단, <u>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u>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u>준비, 지원, 시도</u> 등을 하였고 시민, 국

원 안	수 정 안
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u>의혹사건</u>	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6.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u>의혹사건</u>	7.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7.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u>의혹사건</u>	8.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8.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u>의혹사건</u>	9.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u>범죄 혐의 사건</u>

원 안	수 정 안
<u><신 설></u>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주 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함.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지도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군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5조제2항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였고,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음.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동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를 심의 및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가담하였음.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였음. 또한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

수원 등을 점령하여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위와 같은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

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준비, 지원, 시도 등을 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 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 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